

국가교육위원회

의 결

안 건 번 호 제2026-5호

안 건 명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

의결연월일 2026. 2. 12.

주 문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수정의결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6년 2월 12일

위원장 차 정 인

상임위원 이 광 호

상임위원 김 경 회

위원 강 은 희

위원 김 건

위원 김 영 도

위원 김 용

위원 김 주 성

위원 박 영 환

위원 반 상 진

위원 손 덕 제

위원 양 오 봉

위원 연 취 현

위원 유 민 봉

위원 윤 건 영

위원 이 보 미

위원 이 슬 기

위원 이 현

위원 장 신 호

위원 전 은 영

<별지>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 수정 의결 사항

□ 수정 의결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아 래 -

1. 제8조제7항 ‘제5항에 따른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위원은 사전에 간사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2. 제19조의2제1항 ‘본위원회를 방청하고자 하는 자는 회의 시작 전에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본위원회를 방청하고자 하는 자는 회의 1일 전까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수정한다.
3. 제22조제3항 ‘의결이 필요한 안건 등은 표결로써 의결하며, 표결 시점에 회의에 참석중인 위원에 한하여 표결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구두로 표결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4. 제15조제3항 단서 ‘다만, 위원장은 비공개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 안건을 공개로 전환할 수 있다’를 ‘다만, 위원장은 비공개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비공개 안건을 공개로 전환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5. 제17조 단서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한다.
6. 제8조제5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을
수정한다.

□ 수정 사유

국가교육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위와 같이 수정한다.